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8 선고 2021가합537062 판결 [토지지분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원고 L의 승계참가인N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부영

피고○ 주식회사

변론 종결2021. 11. 24.

판결 선고2021. 12. 8.

주 문

1. 피고는 서울 서초구 P 대 1717.4㎡와 서울 서초구 Q 대 918.8㎡ 중

가. 원고 A, B에게 각 2636.2분의 6.6135 지분에 관하여 각 2020. 10. 29.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나. 원고 C, D에게 각 2636.2분의 6.6135 지분에 관하여 각 2019. 5. 13.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다. 원고 E, F에게 각 2636.2분의 6.6135 지분에 관하여 각 2019. 10. 21.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라. 원고 G에게 2636.2분의 13.227 지분에 관하여 2005. 5. 23.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마. 원고 H에게 2636.2분의 13.227 지분에 관하여 1994. 3. 21.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바. 원고 I에게 2636.2분의 13.227 지분에 관하여 2019. 6. 5.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사. 원고 J에게 2636.2분의 13.227 지분에 관하여 1998. 1. 13.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아. 원고 K에게 2636.2분의 13.227 지분에 관하여 1996. 6. 5.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자. 원고 L의 승계참가인 N에게 2636.2분의 13.227 지분에 관하여 2021. 5. 31.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차. 원고 M에게 2636.2분의 13.227 지분에 관하여 2004. 1. 26.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 L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승계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원고 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원고 L의 승계참가인
주문과 같다.

2. 원고 L

피고는 원고 L에게 서울 서초구 P 대 1717.4㎡와 서울 서초구 Q 대 918.8㎡ 중 2636.2분의 13.227 지분에 관하여 2018. 2. 12.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 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원고 L의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 L의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이 2021. 5. 3. 원고 L로부터 서울 서초구 R, S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2021. 5.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 하였다는 사실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원고 L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L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다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승계참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승계참가인이 2021. 6. 29. 이 법원에 적법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는데, 이후 원고 L의 적법한 소송탈퇴가 없으므로, 원고 L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석재

판사강영기

판사이창현

별지